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0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 지정 취소 근거 마련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50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
- (3) 회 부 일 : 2024.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u>라.·마.</u> (생략) 7.·8. (생략) ② ~ ⑨ (생략)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수급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u> <u>마.·바.</u>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7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¹⁾

□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 중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서 시설급여기관(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²⁾이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³⁾

-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하여야 함.

-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장기요양시설(6,269개) 중 1,755개소(28.0%)에서 1회 이상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 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낙상방지’, ‘삽관기구 제거 방지’, ‘기저귀 제거방지’, ‘상처 감염방지’ 등의 사유로 사용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신체억제대 사용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시설수	5,543	5,762	5,988	6,150	6,269
사용 시설수	1,212	1,325	1,434	1,566	1,755

주: '사용 시설수'는 1회 이상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시설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최근 요양원에서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침대에 고정하고 매일 최대 11시간 동안 강박한 사건⁵⁾, 의사 처방이나 보호자 동의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방치하여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⁶⁾ 등이 발생하는 등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체적 제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4)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2022. 7. 20.

5) 한겨레신문, 요양원 노인, 침대에 휠체어에 ‘강박’...목숨 잃는 사고까지, 2024. 10. 2. 기사

6) KBS, ‘60대 노인 학대’ 요양보호사·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2024. 6. 4.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에 따른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현재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도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인권을 제고하고 신체적 강박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먼저, 수급자 본인이나 다른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⁷⁾를 참고하여 엄격한 목적 및 절차·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7조제9항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령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04)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존엄한 돌봄을 위하여 신체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계약의사의 지시하에 제한적 허용하는 등 적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03